보건용 마스크 수출 관련 안내문

('20. 7. 10.(금), 식약처 마스크 수출지원팀)

○ **수출 가능한 마스크 :** 보건용 마스크

※ 수술용마스크 및 비말차단용마스크('20.6.1. 의약외품으로 유형 신설)의 경우 수출 금지

○ **수출자**

-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
-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

○ **수출 가능 물량** : 식약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로 정한 수량 ('20.7.12. 수출신고 건부터 적용)

- 업체별 배정된 수출가능 물량은 의약품안전나라 생산·판매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월 1일(7월의 경우 12일) 확인 가능
- 수출 물량이 식약처장이 정한 수량 이내인지 확인을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**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**받아야 함 (제정고시 제9조제3항)

(확인서 발급 구비서류)☞ 세부 절차 등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참고
-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 신청서
-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사본
- 생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(수출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에 경우 해당)

※ 다만,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가능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사전 승인 필요

○ **수출 가능 국가 및 목적 :** 제한 없음

○ **수출 절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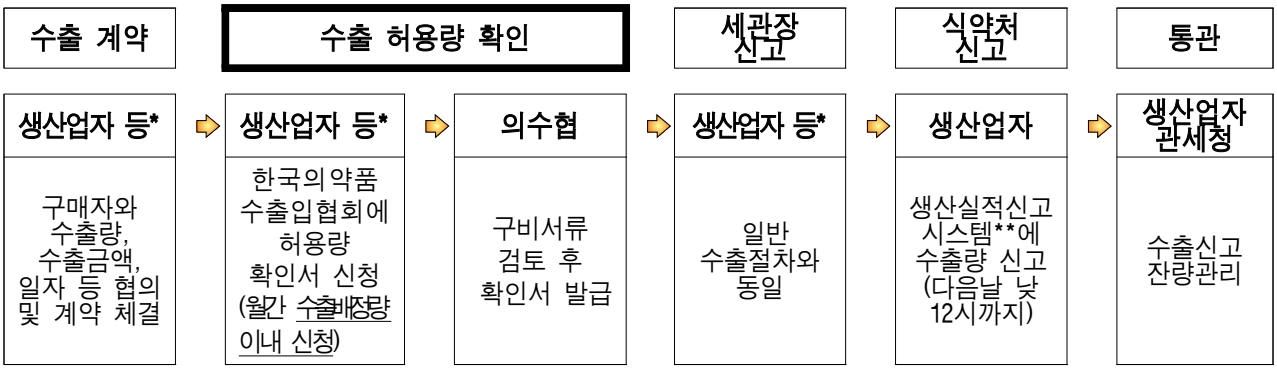

* 생산업자 등 :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,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
** 생산실적신고시스템 : 의약품안전나라(nedrug.mfds.go.kr)

○ **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**

- 무역서류(상업송품장, 포장명세서 등)
-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발행 수출허용량 확인서

○ **문의처 :**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마스크 수출지원팀
(Tel. 043-719-1329, 1330)